

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

수신 체육관장

참조 사범

제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건

1. 귀 체육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협회에서는 「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」 관련하여 도로교통 공단과 협의하여 교육시간을 매주 화요일 오전으로 조정 하였으니,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첨 부: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 안내.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장



담당 김기연 사무국장 김옥태 전무이사 김화영
전 결

시행 율태협 제2012-062호 (2012.04.10) 접수 ()

우. 681-270 울산광역시 중구 영포로 85(남외동) / <http://www.ulsantkd.org>

전화 052)281-2455/2100 / 전 송052)292-0166 / E-mail :ulsantk@hanmail.net / 공개

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 안내

■ 교육목표

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승 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.

■ 관련법령

- 도로교통법 제53조의3(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교육)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(어린이 통학 버스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)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(어린이 통학 버스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)

■ 교육대상

- 아래 시설가운데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운전하는 자
 -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,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 -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
 - ③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
 - ④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(태권도장)
- 운영자 :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,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.(도장 대표자).
- 운전자 :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.

※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·운전하는 자 포함

■ 교육내용 및 시간

| 교육 과목 | 교육 내용 | 교육 방법 | 교육 시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|
| 1.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| ○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| 강의 및 시청각 교육 | 25분 |
| 2. 어린이 통학버스등과 관련된 법령 | ○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등 | 강의 및 시청각 교육 | 25분 |
| 3. 어린이 통학버스등의 주요사고 사례 분석 | ○승합자동차(버스)의 특성 ○관련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운전 및 안전한 이용방법 등. | 강의 및 시청각 교육 | 50분 |
| 4. 영화 상영 | ○관련 영화 상영 | 영화 | 45분 |

※ 3교시 교육 여건에 따라 시청각 교육 또는 강의로 진행

■교재 : 공단 발간 교재 지급

■교육비: 무료(3시간)

■준비물

-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 운전자의 경우 교육확인증에 부착할 사진 1장
(사진 3cm x 4cm 탈모, 상반신으로 된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
■수료증 배부

- 운전자- 안전교육확인증(어린이통학버스등의 내부 부착)
- 운전자- 안전교육확인증(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)

■교육접수

(1) 예약

-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생이 직접 예약
- 교육 예약하기 방법

